

(내규 제2호) 운영관리규정 개정 이유서
(2024.02)

□ 자율규제 역할 강화 및 운영의 독립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계리실 무기준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, 이를 반영한 운영관리 규정 개정(※2024년 2월 이사회 의결)

① **이사회 산하의 별도 독립 기구로 전환** 내규 개정, 이사회 승인

- 계리실무기준원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예산 계정 분리

현 재(AS-IS)	➔	개 선(TO-BE)
• 기준원 관련 예산은 별도 구분 없이 회 일반계정과 통합하여 관리		✓ 기준원 관련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, 독립성 보장

- 계리실무기준원장 임명 권한을 이사회로 변경

현 재(AS-IS)	➔	개 선(TO-BE)
• 본회 회장이 임명, 이사회에는 임명 후 보고		✓ 회장이 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

- 계리실무기준원 산하 위원회 변경

현 재(AS-IS)	➔	개 선(TO-BE)
• 산하 5개 위원회(가정관리, 계리실무기준, 리스크관리, 보험회계, 상품) 관장		✓ 산하에 계리실무기준위원회 1개 위원회만 배치(4개 위원회는 계리사회 직역 위원회로 운영)

- 계리실무기준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전담인력 배치

현 재(AS-IS)	➔	개 선(TO-BE)
• 사무처에서 업무 지원		✓ 자율규제팀을 기준원 전담조직으로 배치(인건비도 분리 운영)

② **위원 구성 변경** 내규 개정, 이사회 승인

- 현재 계리실무기준원은 원장과 산하 위원회* 위원장이 위원으로

구성되어 업무 주체보단 주로 관리 역할을 수행하였으나, 향후 실질적인 자율규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위원 구성 변경

* 가정관리·계리실무기준·리스크관리·보험회계·상품위원회

현 재(AS-IS)	개 선(TO-BE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: 산하 5개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독립성·객관성·전문성을 갖춘 전문 위원 8명 이내로 구성(비상임) ✓ 1/3 이상을 외부위원(학계 등)으로 구성 <p>※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: 원장, 상임위원, 비상임위원(7명)으로 구성(비상임위원은 학계, 회계법인, 보험사 등 소속)</p>

운영관리규정 변경대비표

현재	개정(안)
제3조(운영) 본회는 효율적인 회 운영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위원회, 사무처 외에 위원회를 지원하는 원, 본부, 단 등의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3조(운영) ① 본회는 효율적인 회 운영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위원회, 사무처 외에 (삭제) 원, 본부, 단 등의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1항에서 정한 특별기구에는 계리실무기준 등을 제·개정하는 계리실무기준원을 포함한다.
제5조(설치) ① 제4조(종류)의 위원회는 이 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다.	제5조(설치) ① 제4조(종류)의 위원회는 이 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또는 특별기구 산하에 설치 운영한다.
제7조(구성)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, 전기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특별기구의 장, 감사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와 사무처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 ② 기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.	제7조(구성)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, 전기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특별기구의 장 (단, 계리실무기준원장은 제외) , 감사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와 사무처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 ② 기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. 단, 계리실무기준위원회는 별도로 정한다.
제8조(임기)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 후 제3차년도 정기총회 종료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제8조(임기)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 후 제2차년도 정기총회 종료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9조(역할) 계리실무기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국제계리실무기준(ISAP) 번역 및 국내 채택(KSAP) 2. 국제계리지침(IAN) 번역 및 국내 채택(KAN) 3. 계리실무표준, 매뉴얼 등의 제·개정 4. 계리기준 교육 및 홍보	제19조(역할) 계리실무기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한국계리실무기준(KSAP)의 채택 2. 계리실무 관련 가이드라인·매뉴얼 등의 채택 3. 계리실무 적합성 판단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p>5. 계리실무 적합성 판단 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54조(구성) ① 특별기구의 장은 본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선임한다.</p> <p>② 특별기구는 소관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, 각 특별기구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계리실무기준원 : 가정관리위원회, 계리실무기준위원회, 리스크관리위원회, 보험회계위원회, 상품위원회</p> <p>2. 계리연수원 : 교육위원회, 시험위원회, 프로페셔널위원회</p> <p>3. 계리연구원 : 계리학연구위원회</p> <p>4. 회원관리본부 : 회원관리위원회, 홍보위원회, 윤리위원회</p> <p>5. 국제협력단 : 국제지원위원회</p>	<p>제54조(구성) ① 특별기구의 장은 본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선임한다. 단, 계리실무기준원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② 특별기구는 소관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, 각 특별기구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단, 계리실무기준원은 3항과 같이 별도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계리실무기준원: 계리실무기준위원회</p> <p>2. ~ 5. (좌동)</p> <p>③ (신설) 계리실무기준원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업무의 전문성, 독립성 제고를 위해 1/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(신설) 계리실무기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계리실무기준원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⑤ (신설) 계리실무기준원은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일반 예산 계정과 분리하여 운영하며, 산하에 상근 전담인력을 둔다.</p>
<p>제55조(특별기구 장의 직무) ① 특별기구의 장은 소관 위원회의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. ② 기타 특별기구의 장이 유고 또는 공석인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55조(특별기구 장의 직무) ① 특별기구의 장은 소관 위원회의 사업을 총괄 운영한다. ② 기타 특별기구의 장이 유고 또는 공석인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제56조(준용규정) 제8조, 제12조, 제13조 전단의 조항은 특별기구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다만 특별기구의 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56조(준용규정) 기타 특별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</p>